

감리지적 사례 FSS/2008-24 :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충당부채 인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 **결정일:** 2016년
- **회계결산일:** '14.1.1.~'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3개의 펀드를 설정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SPC를 통해 저가항공사에 비행기를 임대하여 운용수익을 얻고 있었다. 이후 항공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대금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펀드투자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① 제1호 펀드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 패소('14.7월)
 - ② 제2호 펀드 : 제1호 펀드 패소로 인해 투자자와 손해배상 합의('14.8월)
 - ③ 제3호 펀드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소송 제기('14.9월)
- 회사는 제2호 및 제3호 펀드와 관련하여 소송 결과에 따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할 수 없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4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제1호 펀드의 소송 패소로 제2호 및 제3호 펀드의 합의 또는 진행중인 소송의 손실예상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에 따르면 (1)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2)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3)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문단 16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또는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생겼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동일한 구조의 제1호 펀드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패소한 상황에서 향후 제2호 및 제3호 펀드의 손해배상액이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여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회사 실무담당자들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4. 시사점

소송과 관련하여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검토할 때, 개별 소송의 결과뿐만 아니라 확인 가능한 동일 유형의 소송이 존재할 경우 그 소송의 결과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